

남북경협 추진원칙

김갑식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gomkim12@gmail.com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경제통일 구현’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즉, 남북간 경협을 재개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하며 남북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활로를 개척하고 경제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출범 이후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이 정책과제의 기본계획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실행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관건이다.

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3대 벨트를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의 연계를 추진한다고 했다. 그리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민간경협을 재개하겠다고 했고, 또한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간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겠다고 했다. 이는 해당 정책과제가 남한과 북한을 뛰어넘어 동북아 전역과 연계될 수밖에 없고, 대북제재라는 제약이 존재한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실행계획을 세움에 있어 북측의 경제발전 구상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USB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주변 4국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구상에 관심이 많다. 자국의 경제발전 전략에 한반도 평화는 기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주변 4국도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본격화되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북제재라는 현실적 제약은 실행계획에서 밑바탕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실행계획이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머문다면 그것의 진척은 난망할 것이다.

향후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넘어 평화 체제 구축의 초석으로 작용해야 한다. 또한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일방적·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남측의 경제적 이익도 고려하는 호혜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남북경협을 통해 남한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을 통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동북아 지역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남북경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추진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 남북 합의사항(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 등)의 발전적 계승에 기반하여 최근 합의사항(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을 추진한다. 둘째, 신(新) 정경분리/민관분리 원칙을 유지한다. 기업의 자율성에 기반한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여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간기업에 대해 철저한 자기책임 원칙을 요구하며 정부 스스로도 기업의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한다. 셋째, 선도적 역할과 점진적·단계적 추진의 균형을 이룬다. 남북경협의 선도적 역할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남북경협을 모색한다. 그와 동시에 북한과의 경협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남북경협의 독점적, 배타적 지위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넷째, 남북경제의 공동성장과 북한경제의 체질 개선을 촉진한다. 남북경제 모두에 이익이 되는 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북한경제의 자생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며, 특히 북한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북한경제의 체질 개선을 촉진한다. 다섯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과 연계하여 남북경협을 추진한다. 주변국이 참여하는 다각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동북아 차원의 협력사업에 북한을 참여시키거나 남북협력을 동북아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러한 남북경협의 목표와 추진방향 하에서 남북경협이 내실 있게 추진되려면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의 자생력 있는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함과 동시에 상생의 남북경협으로 발전해야 한다. 식량부문의 경우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량의 직접 지원보다는 농업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공업, 관광, 도시, 인민생활, 산림 등은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하며, 북한의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협력사업을 지양하고 남북경협이 남한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자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자협력 자체에 대한 각국의 입장, 투자이익을 거두려는 기업의 입장, 각국의 발전수준과 경제정책 및 시스템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각국이 프로젝트에 합의한다 해도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사전 협의와 검토, 협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충분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합의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기구 및 국제 NGO와의

협력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지방정부의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북한 지방급 경제개발구, 군 협동농장, 도시의 특정기업소 단위를 대상으로 남한 지자체가 사업비용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북한 협력단위의 자생력을 제고하며 중장기적으로 남한 및 외부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